

제 호	
유원시설업 신고증	
1 . 영 업 소 명 칭	
2 . 소 재 지	
3 . 영 업 의 종 류	
4 . 대 표 자	
5 . 대 표 자 의 생 년 월 일	
6.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구수 (종 수)	
7. 영 업 기 간 (6개월 미만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)	
「관광진흥법」 제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.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 · 특별자치도지사 ·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 직인	

신고번호 :

변경 및 처분사항

[illegible]